

#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81
----------	------

제출연월일 : 2018. 10. 5.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정이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가입대상(안 제3조)

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안 제4조)

라. 보험금액 산정(안 제7조)

마. 보험금 청구 및 지급(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3. 근거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4.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18. 9. 3. ~ 9. 27.(의견없음)

##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구구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구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

4 (제210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거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수신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안전총괄과-13557(2018.8.29.)호와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 여성청소년과장

주무관

여성가족계장

여성청소년과 전결 2018. 9. 5.  
장

협조자

시행 여성청소년과-33777

(2018. 9. 5.)

접수 안전총괄과-14039

(2018. 9. 5.)

우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복산동, 중구청)

/ <http://www.junggu.ulsan.kr>

전화번호 052-290-4903

팩스번호 052-290-4909

/ [ssalnoon@korea.kr](mailto:ssalnoon@korea.kr)

/ 대국민 공개

울산큰애기와 함께하는 울산중구 여행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2018A울산중구034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신동학	전화번호 052-290-406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8월 2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p>본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p> <p>제정의 주요내용은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가입대상(안 제3조), 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안 제4조), 라. 보험금액 산정(안 제7조), 마. 보험금 청구 및 지급(안 제7조 ~ 제8조) 등에 대한 내용임.</p>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p>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09월 05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울산광역시중구분석평가책임관</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류지숙/052-290-4912)</p> <p><b>안전총괄과장</b> 귀하</p>			